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88
----------	-----

발의연월일 : 2020. 6. 15.

발의자 : 한정애 · 김영호 · 김민기

민홍철 · 송옥주 · 양향자

박홍근 · 권인숙 · 박상혁

윤관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상에서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아동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성착취 사진과 동영상을 돈을 받고 공유한 사건이 발생하여 전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을 음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주체로 표현한 것 등은 부적절하므로 ‘음란한 행위’, ‘성적 수치심’ 등의 표현을 삭제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호).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 중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성적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생 략)</p> <p>2. 아동에게 <u>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u></p> <p>3. ~ 11. (생 략)</p>	<p>제17조(금지행위)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성적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u></p> <p>3. ~ 11. (현행과 같음)</p>